규제영향분석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목 차>

1.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작성자	이름	류정선
	담당부서(과)	해상교통관제과		직급	7급
	국장	여성수		연락처	032-835-2685
	과장	허학선		이메일	piglet0110@mail.go.kr

2024. 03. 18. 작성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여 성 수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기준 신설</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별표2, 별표3</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4.04.09~2024.04.19</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 등 구조물과 선박간 충돌사고 예방를 위해 선박의 수면상 통과높이 신고 규정 신설 추진
* ’24.2.8. 거제 거가대교-해상크레인 충돌, ’24.2.22. 중국 리신샤대교-화물선 충돌, ’24.3.26. 미국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컨테이너선 충돌
○ 해상의 교량과 송전선이 파손될 경우 인명피해 및 막대한 사회적 복구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 선박의 수면상높이가 해상교량, 송전선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수역을 통과하는 경우 자선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
* (기존) 3개 교량(인천 · 영종 · 서해대교)만 통과시 신고
→ (확대) 전국 15개 교량 및 4개 송전선 수역 통과시 신고</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교량·송전선 수역을 통과하는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td></tr>
<tr><td>9.규제목표</td><td colspan="3">○ 선박과 교량·송전선 간 충돌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td></tr>
<tr><td rowspan="3">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2">10.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td><td colspan="3">○ 안전에 관한 선장의 신고사항으로 비용의 정량적 분석이 어려우나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의 편익이 더 크다고 사료됨</td></tr>
<tr><td>기타</td><td>12.규제일몰제</td><td colspan="3"><table><tr><th>대분류</th><th colspan="2">소분류</th></tr><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해당</td></tr><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해당</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td><td rowspan="6"></td><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 colspan="2">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 colspan="2">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4"><table>
<tr><th>일몰설정여부</th><th>일몰조문</th><th>연장여부</th></tr>
<tr><td></td><td></td><td></td></tr>
<tr><th>일몰유형</th><th>일몰설정기간</th><th>일몰주기</th></tr>
<tr><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4">없음</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2]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가. 이동 10분 전	1) 선박명 2) 이동예정 시각 3) 출발지·목적지 4)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가. 수면상 높이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나. 수면상 높이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 다. 수면상 높이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

개 정 안

[별표2]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가. 이동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아래 구역의 교량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신고기준 이상인 선박만 해당)

구 역	교 량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m)
군산광역	동백대교		15
목포광역	목포대교		45
평택·당진항	서해대교	주경간	62
		주경간 이외	45
인천항	인천대교		50
	영흥대교		18
경인항	영종대교		30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15
여수·광양항	이순신대교		60
	묘도대교		40
울산항	울산대교		55
부산항	부산항대교		60
마산항	마창대교		60
	거가대교	거제~저도 구간	32
		저도~중앙도 구간	47
	가조연륙교		18
통영연안	연화도~우도 보도교		20

5) 아래 구역의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신고기준 이상인 선박만 해당)

구 역	구간(선로명)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m)
인천항	북항 관공선부두 – 북항 5부두 구간	52
	영흥도–선재도 구간	24
울산항	매암부두–장생포 호안 구간	40
통영 연안	욕지도-하노대도 구간	26

현 행

2. 관제대상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경우

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가. 도선사가 승선할 때	1) 선박명 2)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3) 승선 시각·장소 4) 목적지 5)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가. 수면상 높이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나. 수면상 높이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 다. 수면상 높이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

개 정 안

2. 관제대상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경우

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가. 도선사가 승선할 때	1) ~4) 현행과 같음 5) 아래 구역의 교량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신고기준 이상인 선박만 해당)

구 역	교 량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m)
군산광역	동백대교		15
목포광역	목포대교		45
평택·당진항	서해대교	주경간	62
		주경간 이외	45
인천항	인천대교		50
	영흥대교		18
경인항	영종대교		30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15
여수·광양항	이순신대교		60
	묘도대교		40
울산항	울산대교		55
부산항	부산항대교		60
마산항	마창대교		60
	거가대교	거제~저도 구간	32
		저도~중죽도 구간	47
	가조연륙교		18

6) 아래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신고기준 이상인 선박만 해당)

구 역	구간(선로명)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m)
인천항	북항 관공선부두 – 북항 5부두 구간	52
	영흥도–선재도 구간	24
울산항	매암부두–장생포 구간	40

※ 비고 : "수면상 최고 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 또는 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현 행

[별표3] 관제구역 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

구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군산 광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목포 광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주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목적지 3) 통과위치 4) 입항예정 시각、장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30분전 및 5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평택 、 당진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수면상 최고 높이(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수면상 최고 높이(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 정 안

[별표3] 관제구역 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

구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군산 광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동백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15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동백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15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목포 광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목포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45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목포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45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주 광역 구역	진입 신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출 신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평택 、 당진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선박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경간 항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5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경간 이외의 항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선박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경간 항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5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경간 이외의 항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천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수면상 최고 높이(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5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DWT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6)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LPG 또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천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50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인천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영흥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52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북항 관공선부두 - 북항 5부두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라) 수면상 최고높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영흥도- 선재도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5) ~7) 현행과 같음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수면상 최고 높이(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5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DWT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6)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LPG 또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50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인천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영흥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52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북항 관공선부두 - 북항 5부두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라) 수면상 최고높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영흥도- 선재도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5) ~7) 현행과 같음
경인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갑문 도착예정 시각 5)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인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선박이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현 행				개 정 안			
			3) 목적지 4)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선박이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수·광양항 구역	진입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수·광양항 구역	진입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미터 이상인 선박이 묘도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신고	가 출항 30분전 및 5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신고	가 출항 30분전 및 5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미터 이상인 선박이 묘도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울산항 구역	진입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울산항 구역	진입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55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울산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매암부두-장생포 호안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55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울산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매암부두-장생포 호안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산항	진입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부산항	진입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부산

현 행				개 정 안			
구역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역			항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6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6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마산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마산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0미터 이상인 선박이 마창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32미터 이상인 선박이 거가대교 저도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47미터 이상인 선박이 거가대교 증죽도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 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선박이 가조연륙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0미터 이상인 선박이 마창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32미터 이상인 선박이 거가대교 저도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47미터 이상인 선박이 거가대교 증죽도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 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선박이 가조연륙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통영연안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입항예정 시각·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통영연안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연화도-우도보도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26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욕지도-하노대도 구간 배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table><tr><td></td><td>진출 신고</td><td>가 출항 10분 전</td><td>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td></tr></table> ※ 비고 : 입항 또는 출항의 시점은 「항만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등(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에 입항하거나, 계류시설 등에서 출항하는 때를 말한다.	<table><tr><td></td><td>진출 신고</td><td>가 출항 10분 전</td><td>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연화도-우도보도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26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욕지도-하노대도 구간 배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td></tr></table> ※ 비고 1. 입항 또는 출항의 시점은 「항만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등(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에 입항하거나, 계류시설 등에서 출항하는 때를 말한다. 2.“수면상 최고 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 또는 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를 계기로 선박과 해상구조물(교량, 송전선)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4.2.8. 거제 거가대교-해상크레인 충돌, '24.2.22. 중국 리신샤대교-화물선 충돌, '24.3.26. 미국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컨테이너선 충돌

(韓) 해상크레인-거가대교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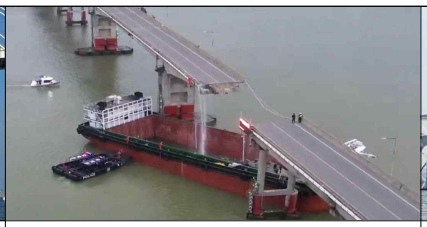

(中) 선박과 리신샤대교 충돌

(美) 선박과 볼티모어 교량 충돌

○ 해상교량·송전선이 파손될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개입** 필요

○ 따라서, 전국 관제구역에서 **해상교량과 송전선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자선의 수면상 높이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고시)을 개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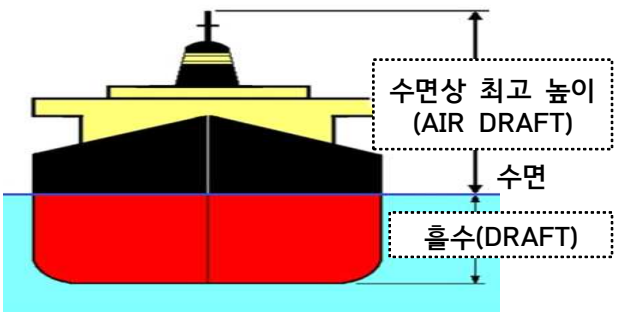

○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AIR DRAFT)***
해상교량 등 구조물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로써, 운항자는 반드시 자선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숙지해야 함

* AIR DRAFT : 수면 상에서 선박의 최상층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선박항해용어사전 / 공길영 편저, 한국해양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수면상 높이신고 기준 현행 유지
	내용	해상교량 3개소(인천·서해·영종대교) 신고 현행 유지

규제대안	대안명	교량 15개소, 송전선 4개소에 수면상 높이 신고
	내용	전국 관제구역 내 모든 교량 15개소 및 송전선 4개소에 수면상 높이 신고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선박운항자 신고의무 부담 증가 없음	운항부주의로 인한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 우려
규제대안	운항자가 교량·송전선과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재확인 받음으로써 사고예방 효과 극대화	운항자의 신고의무 부담감 증가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 선택**

- 현행유지안은 신고대상에 모든 해상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성 상존
- **해상구조물 충돌사고 예방이라는 개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제구역 내 **全 교량과 송전선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규제대안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해기사 협회	24.3.21~4.1, 서면 의견조회	이견없음
해상크레인 선사 (전국 51척, 37개 선사)	24.3.21~4.1 인천예부선협회, 부산예부선선주협회, 그밖에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사에 유선 통화 후 서면 의견조회	이견없음

3. 규제목표

○ 선박과 해상구조물 간 충돌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교량 등과 충돌 우려가 있는 일정 높이 이상의 선박의 선장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진입제한적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및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로 일몰설정 예외 해당)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 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교량과 송전선 각각의 일정기준 높이 이상 선박만 신고하도록 명확히하여 포괄적 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	수면상 높이 신고 기준이상 선박만 신고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 선박은 신고하지 않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
사후 평가관리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및 유예 등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호 주)** 브리즈번항 교량 통과 예정 시 일정 높이 이상 선박은 항만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송전선의 경우 일정 수면상 높이 이상의 선박은 선박교통관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Port Procedures and Information for Shipping-Brisbane.August.2023. 인용

- **(중 국)** JIAXING항은 선박 출입시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의 수면상 높이를 신고하도록 함

* VTS Traffic Services Guide_(China)_(Jiaxing VTS) 인용

- **(캐나다)** 밴쿠버항 First Narrows Lions Gate Bridge 통과 시 최소 2미터 이상의 여유 높이를 두어야 하며, 일정높이 초과 선박은 통항 24시간 전에 항만당국과 관할 도선사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

* Port Information Guide, 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 January 2024 인용

- **(미 국)** 뉴욕항은 선박이 교량 통과시 2ft(약 61cm) 여유를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

* USCG, Vessel Traffic Service New York User's Manual, Feb 2023 인용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선박이 관제구역 내에서 이동·진입·진출 시 선명, 목적지 등 VTS 센터에 신고해야 할 내용 중 **일정 높이 신고기준 이상의 선박이 수면상 높이를 신고**하는 **최소한의 규정**임

- 수면상 높이는 **운항자가 선박 조종에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정보**로써, 규제 준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서해·인천·영종대교 3개 교량은 수면상높이 신고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 중

-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본 신고 제도의 필요성은 대다수 공감**하고 있으며, **충분한 홍보**를 거쳐 시행한다면 **피규제자(선장)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국 19개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관제구역 선박출입 신고 접수 및 이동상황 관찰 중이며 추가적인 인력배치 없이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집행이 필요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행정규칙 개정 추진계획 수립 : '24. 3. 7.

○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4. 3. 21. ~ 4. 1.

○ 개정안 행정예고 : '24. 4. 9. ~ 4. 19.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의무 확대 후 매년 시행하는 **VTS 이용자 만족도 조사항목에 반영** 및 **매년 교량 충돌 사고발생 건수**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타당성 검증**

3. 종합결론

○ 선박과 교량, 송전선 충돌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생활의 불편함, 사회적 복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선박의 수면 상높이 신고 제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교량 15개소, 송전선 4개소에 수면상 높이 신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안전에 관한 운항자의 신고사항으로 정량적 분석이 어려워 선박과 교량, 송전선 충돌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생활의 불편함, 사회적 복구 비용 등을 고려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교량 15개소, 송전선 4개소에 수면상 높이 신고>

①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교량,송전선 수역을 통과하는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
활동제목	해상교량, 송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일정높이 이상 선박은 수면상 최고높이를 관할 VTS 센터에 신고
비용항목	운항자의 신고사항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항해 계획상 통과하고자 하는 해상교량, 송전선의 신고 기준 높이 확인 및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확인하여 기준이상 시 신고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선박교통관제구역내 교량, 송전선 관리사
활동제목	교량 및 송전선 관리
편익항목	선박과 접촉사고 예방으로 인한 자사 시설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피규제자의 규정준수로 관리시설 보호

③정부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항만, 도로, 선박교통 등을 관리하는 정부부처
활동제목	사회기반시설 등 관리, 감독
편익항목	사고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선박과 교량, 송전선 접촉사고 예방으로 사회 전체적 편익 증대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교량, 송전선 전력 이용자 등 일반국민
활동제목	선박교통관제구역의 15개 교량 및 4개 송전선의 전력 이용자
편익항목	교량, 전력 이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사고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